

醫療保險誌上講座

齒協保險委員會 提供

- ◇……醫療保險은 이제 전 開業會員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實體的 制度로 자……◇
- ◇……리를 굳혔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胎生되고 促進……◇
- ◇……되고 적응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마찰은 필수적인 것. 이 마찰의……◇
- ◇……순환을 얼마만큼의 최대공약수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적응의 가장 科……◇
- ◇……學的인 방법일 것이다. ……◇
- ◇……齒協의 전 開業회원들에게 새로운 制度의 적응에 대한 最少限의 이해를 돕……◇
- ◇……고자 醫療保險에 대한 의문점들을 問答式으로 엮어본다. (編輯者 註)……◇

<醫療保險에 關聯된 諸般 疑問點이 있으시면 63-7873 齒協事務局 醫療保險擔當에 電話 또는 書信 連絡바랍니다.>

【문】 의료보험 피보험자(피부양자)가 診療終了 후 피보험자증을 제시했을 경우 同診療分(요양급여)을 一般 판행수가로 처리하여도 되나?

【답】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서는 『피보험자증의 분실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급여(診療)를 받고자 할때, 필히 피보험자증을 提示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급여(診療等)가 끝난후 피보험자(피부양자)임을 밝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醫療保險 피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一般酬價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 아말감 卽處후 次回來院한 환자에 대해 再診料이외에 보통처치를 산정·請求하였던바 그 후 환급처분을 받았다. 잘못된 점이 있었는가?

【답】 現行 醫療보험 診療酬價는 保社部에서 고 시된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 診療酬價基準에 「아말감研磨」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환급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더우기 보통 처치는 齒牙우식증의 초기치치로써 「와동형성+ 藥劑침부+가봉」등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마료를 적용시킬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次回來院에 대한 再診料는 산정될수 있

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문】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X-Ray를 촬영하였으나 次回來院하여 판독만으로 診療가 종료되었다. 어떻게 請求해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X-Ray는 永久齒의 붕출상태나 顎骨의 병변을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適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정치료를 위하여 X-Ray 촬영을 하였다면 적용되지도, 請求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請求明細書의 상병명을 前記한 ①영구치의 붕출상태 ②악골의 병변等に 相當한 사항으로 표기함은 물론 충분한 내역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診療酬價로 적용시킬수 있는것은 ①초진 1회 ②재진 1회 ③X-Ray촬영판독 및 재료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문】 齒髓診斷器(Pulp Tester)를 적용시킬수 있는 범위는?

【답】 치수진단기는 ① 우식증이 있을때 치수의 병변진단 ② 齒牙가 온도적 자극(冷溫)등에 과민할때 또는 약간의 동통이 있을때 ③ 치수열과 치주염의 합병증이 있을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치시 外科의處置를 한다던가 치은염

또는 구내염의 연조직질환의 처치등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 初回來院時 치석제거를 환자가 次回來院 없이 診療가 종료되었다. 이 경우 齒石除去料에 대한 請求가 가능한지?

【답】 불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치석제거는 치주염 3도이상의 병변에 대해 齒周소파나 치은절제수술 또는 치은박리수술을 시술키 위한 「前進施術」로 가능한 것입니다.

齒石除去에는 간단한 경우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간단·복잡을 막론하고 全顎(6顎)을 1回施術로 끝내는 것이 타당하며 酬價는 $\frac{1}{3}$ 顎當 간단한 것은 $19점 \times 6(顎) = 114점$, 복잡한 것은 $55점 \times 6(顎) = 330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단한 경우란 1~2個 치아에 한해서 齒石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의는 복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貴下의 경우와 같이 齒石除去로 끝난 경우에는 일반수가에 의해서 별도의 자비부담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겠습디만, 이때는 患者와의 마찰이 없도록 유의가 필요하디 하겠읍니다.

【문】 8월 1일 상악우측 3번齒牙의 생활치수절단을 한 환자가 8월 20일 再次來院하여 하악 대구치의 즉치를 했을 경우 8월 20일 來院을 初診으로 할 수 있는지?

【답】 齒科에 있어서의 초진과 재진의 日距離는 대략 1個月(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口腔을 1單位로 보는 기준에 의해서 입니다.

상병명이 다른 患者의 경우 初診과의 거리가 1個月 미만인 때에는 재진에 해당되며 1個月을 벗어나는 경우에 다시 初診을 請求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트齒科技工所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73의 2

(73) 3452 (72) 4237

대표 文 一